

진정서 제출 안내문

● 진정사건이란

진정이란 변호사법, 변호사 단체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, 사무직원(사무장 등)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일컬음.

● 진정 대상

진정서는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, 법무법인, 사무직원(사무장 등)에 대해서만 진정이 가능합니다. 만약사무직원(사무장)에 대하여 진정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담당 변호사 성함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-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
● 진정서 제출 방법

진정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. 제출된 진정서는 피진정인에게 공개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셔야 하며,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)

● 진정사건의 종류

변호사법 위반행위, 대한변호사협회 회칙, 규칙, 규정 위반행위,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, 변호사 사무직원의 비위행위 등

● 진정이 불가한 경우(각하)

징계시효(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)가 도과된 경우,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 및 재청원을 한 경우,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한 경우, 청원인이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, 기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
● 처리기간 및 처리과정

진정서 접수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건 처리되며, 지방회에서의 처리과정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단, 복잡한 사안의 경우, 추가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
지방회 진정처리 절차 ▶ 진정서 접수 →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 요청 → 경위서 접수 → 진정서 및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→ 결정 →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(등기우편)

● 지방회의 진정사건 결정 종류

▷ 징계개시신청, 기각

● 징계 종류(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)

피진정인의 징계형의가 인정될 경우, 그 이후의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됩니다.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는 영구제명, 제명, 3년 이하의 정직,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, 견책 중 하나에 대해 징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.

● 재청원(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불복)

지방변호사회의 결정(기각)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, 지방변호사회가 보낸 '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'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윤리팀에 재청원을 하시면 됩니다.